

제 2 절 사회복지과

1. 사 회 복 지

가. 장애인복지

1) 장애인 등록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발달, 정신 장애, 신장, 심장장애, 호흡기, 간, 안면, 장루, 간질 등 15가지의 장애가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거주지 동사무소에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하며, 우리구의 2004년 등록장애인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등록장애인 현황 (2004. 12. 31기준)

(단 위 : 명)

구분	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 언어장애	정신지체	뇌병변	발달	정신	신장	심장	기타
계	12,772	7,661	1,292	1,087	697	1,063	84	290	333	55	210
1급	1,121	301	200	38	211	280	25	31	16	3	16
2급	2,048	643	44	284	264	331	38	147	255	7	35
3급	2,369	1,375	68	186	222	276	21	112	0	45	64
4급	1,857	1,451	79	203	0	77	0	0	0	0	47
5급	2,456	2,017	96	164	0	69	0	0	62	0	48
6급	2,921	1,874	805	212	0	30	0	0	0	0	0

(2) 장애인등록 절차

장애인등록 절차는 거주지 동사무소(장애인담당)에 사진 2매(3×4cm)와 장애인 등록신청서(동사무소비치)를 작성 함께 제출하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인과 상담을 실시한 후 신청인의 장애를 진단하기에 적합(신청인이 치료를 받던 진료기관 등)한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진단 의뢰서를 교부하고, 신청인이 의료기관에 가서 진단(비용→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정부지원(일부), 일반장애인 : 본인부담)을 받으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장애등급 표기)를 동사무소로 보내며, 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서를 확인한 후 장애인 복지카드를 교부한다. 소요기간은 약 1개월이다.

2) 장애인 복지사업

장애인 복지는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경제적 부담경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운영,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가) 장애수당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수급자로서 1급, 2급 장애인, 중복장애인 중 정신지체, 발달장애(자폐) 3급에게는 월 60천원씩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중증장애인(1,2급 중복장애인)에게 월 4만원씩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나) 장애아동 부양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로서 18세미만의 1급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1인당 월 50천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진료시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지원
(단, 의료급여 적용분에 한함)

(라)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정상인에 비하여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1~3급 장애인 중·고등학생과 1~3급 장애인의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전액, 교과서대 10만원(년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28천원(년1회), 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원(학기당 2만원씩 년2회)

(마)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들에게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여 생활능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한다. 교부품목은 장애유형에 따라 욕창방지용 매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등을 교부하며, 2004년에 금년 교부품목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된다.

(바)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도모를 위해 시행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장애인이 대상이 된다.

(2) 장애인 경제적 부담 경감

(가) 장애인용 수입용품 의료용구 관세 감면

관세법 제28조 6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사에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과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되는 의료용구가 수입 될 때에 관세가 감면되는 제도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목적

(나)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장애인용 자동차에 표지를 부착하게 하여 주차편의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LPG 가스충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2003. 11월부터 보행상 장애유무, 본인유무에 따라 차등발급)

(다)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라)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 2001. 7. 1부터 연차적으로 LPG세율 인상에 따라 장애인복지카드나 보호자카드 로 구입한 장애인승용차용 LPG 구입대금 중 세금인상액을 지원하며 2004년도 지원액은 6월까지 210원/ℓ, 7월부터는 280원/ℓ 지원 예정이다.
- 2004. 12. 1월부터 월 250ℓ 까지 지원 (1회 충전회수 및 충전금액 제한없음)

(3)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주간 또는 단기간 보호하여 장애인 가족의 항시 보호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 부랑인 보호 및 행여 사망자 처리

1) 처리절차

(1) 부랑인 보호

일정한 주거나 생업수단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자나 부랑인을 보호하여 입 소대상자 특성에 따라 부랑인시설에 입소 조치한다.

(2) 행여 사망자 처리

행여 사망자는 신고 접수와 동시에 관할 경찰서에서 연고자를 확인하며, 연고자가 없을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구청으로 처리 의뢰하게 된다. 처리 의뢰 접수 시, 구청장은 장의 대행업자인 “인천장의협회”에 화장을 지시하여 화장

후 인천공동묘지에 안치토록 한다.

2. 생 활 보 장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추진경과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산적 복지」 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국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99. 9. 7 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 10. 1일부터 시행되었다.

2) 개 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함이 주요 목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으로는

첫째,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선정기준을 합리화하였다.

-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의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둘째, 급여종류가 확대되었고 급여수준이 증가되었다.

- 주거급여를 선정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긴급급여를 통하여 긴급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셋째, 근로능력자에 대해 근로유인 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를 방지하였다.

-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 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 근로유인 장치를 강구하였으며,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였다.

(조건 불이행시 생계급여 중지)

넷째,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 사업, 생업자금융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간병·재가복지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제공하여 근로능력자가 안심하고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구 여건을 조성하였다.

3)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과 같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다음기준 이하인 가구

〈2005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평가액(월)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 7인 이상 가구는 1인증가시 마다 174,882씩 증가(예 : 7인 1,652,682원…)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1) 특례기준에 의한 현황

[2003. 12. 31 기준]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비 고 (교육비)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4,086	7,843	3,841	7,518	245	325	1,097

※특례수급자 : 재산특례, 의료특례, 교육특례, 자활특례, 타 법령 지원자
(북한이탈주민 등)

(2) 근로능력에 의한 현황

총 수급자	근로 무능력자	근로 능력자	조건부과 현황		
			조건부 수급자	조건부과 제외자	자활급여 특례자
7,843	6,101	1,742	205	1,507	30

5)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라 함은 선정기준에 부적합하나 적용범위가 다음과 같아 수급권자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가) 적용 대상자

- 노인, 중증장애인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단, 재산가액이 6,000만원 이내에 해당하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

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함)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가구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로서
구청장이 소득환산의 대상으로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가구
(이 경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가능)

(나) 급여내용 : 일반수급자와 동일

(2)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의 특례

- (가) 적용 대상자 :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 생계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소득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나) 급여내용 : 일반수급자와 동일

(3) 의료급여의 특례

(가) 적용 대상자

- 소득 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나,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가구 중에서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기초공제액의 2배 이하인 가구로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

(나) 급여내용

-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지원
 - 1종 : 98개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
 - 2종 : 98개 희귀 난치성 질환을 제외한 기타 질환자

(4) 교육급여 특례

(가) 적용 대상자

- 소득인정액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나) 급여내용 : 해당 학생 개인에 대하여 교육급여만 지급

(5) 자활급여 특례

(가) 적용 대상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 급여내용 : 생계·주거급여 중지
 - 해당자 개인에 대해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
 - 자활급여 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적용

(5) 기타 타 법령 지원 수급자

- 적용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자(에이즈감염자),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한센병 정착촌 거주자등

6) 급여의 실시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급여는 (1)생계급여, (2)주거급여, (3)교육급여, (4)해산급여, (5)장제급여가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생계급여

- 급여대상자 : 의료특례·교육특례·자활특례자 및 시설수급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급여내용 :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
(가구별 생계급여액 = 현금급여 기준액-가구의소득인정액-주거급여액)
- 현금급여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액(월)	343천원	571천원	776천원	972천원	1,114천원	1,264천원

※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 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74,882원씩 증가

- 급여방법 : 매월 20일 기준 현금 지급 (계좌입금)

(2) 주거급여

- 급여대상자 : 의료특례·교육특례·자활특례자 및 시설수급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1인가구로서 무료임차자 또는 주거가 없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계좌입금)

- 급여내용

가구규모	1~2인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주거급여액(월)	33천원	42천원	55천원

※ 7인 이상 가구는 6인가구의 1인당 급여액에 당해 가구원수를 곱하여 산출

- 급여방법 : 매월 20일 기준 현금 지급

(3) 교육급여

- 급여대상자 : 수급자중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에 참가한 자

- 급여내용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년1회), 학용품비(년2회), 부교재비(년1회)

- 급여방법 : 현금 지급(계좌입금)

(4) 해산급여

- 급여대상자 :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해산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제외)

- 급여내용 : 출산여성에게 20만원 현금지급(쌍둥이 출산시 10만원 추가, 쌍둥이 30만원, 세쌍둥이 40만원)

- 급여 방법 : 수급자 또는 그 세대주에게 지급

(5) 장제급여

- 급여대상자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장제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해당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 급여내용 : 의료급여1종은 구당 50만원, 의료급여2종은 구당 40만원 지급

- 급여방법 :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나. 자 활 급 여

(1) 목 적

2000.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였다. 자활사업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뿐만 아니라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20%이내)에 대해서도 자활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2) 의의 : 조건부 생계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자(조건부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가해야 생계급여 지급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

(3) 근로능력자(조건부수급자) 판정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근로무능력자
 -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규정)
 -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임신부, 공익근무요원,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장애인복지법상 4급 이내 장애인)

(4) 조건부수급자 유형

취업 대상자	· 즉시 노동시장에서 취업 또는 개인 창업이 가능한 자 · 직업훈련을 통해 노동시장 편입이 가능한 자
비 취업 대상자	·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은 어려우나, 공동작업장·자활공동체 참여, 공공근로기회 제공 등이 필요한 자

다.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신청

(1) 목 적

-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 지원

(2) 내 용

- 용자금액 : 전세보증금의 70%이내
- 신청자격
 - 4,000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만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 저소득주민으로 소득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동법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 용자 신청일 현재 만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 부양가족이 있는 자 또는 만35세 이상의 1년 이상 무주택 단독 세대주
- 선정제외 대상
 - 차량배기량 1,500cc이상의 중형승용차 소유자 (단 2,000cc미만의 장애인 사용차량 제외)

-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소유자중 생업용이 아닌 자동차 소유자
(단, 배기량 1,000cc미만차량 소유자 제외)
- 세대구성원의 소유차량(생업용, 장애인용, 소형승용 등 포함) 2대이상
소유자(단, 차량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및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제외)
- 부동산 소유자(부동산 중 중중묘지 등 환급성이 극히 낮은 토지 제외)
-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 대장상 대상 부분이 주거용이 아닐 경우
나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있는 경우
- 임차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등의 소유로 사회 통념상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요건에 부적합한 자

라.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

1) 목 적

-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 도모

2) 내 용

영구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지녀야 한다.

- 남동구 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국가유공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소득수준 이하인 자
- 일군위안부, 북한이탈주민
- 보호대상 모자가정, 부자가정
-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선정제외 대상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 인천광역시에서 거주한 기간이 신청일 현재 6월 미만인자
 - 생업용, 보철용이 아닌 자동차 보유가구

마. 저소득층 생업자금 신청

1) 목 적

-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또는 운영 자금 융자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2) 내 용

- 융자금액 : 신용융자 무보증 1,200만원 이하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차상위 계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신청자격
 - 본인(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인(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이상인자 1인)
- 담보용자 : 담보범위 내

바. 의료급여사업

1) 의의

의료급여사업은 1977. 12. 31 법률 제3076호로 의료급여사업이 시행되면서 국가재정으로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혜택을 주는 공적부조제도로써 의료보험과 더불어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의료급여대상자가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에서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종류

- (1)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 이주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사회복지시설수용자 등
- (2)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중 1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
- (3)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기준의 120%에 해당하는 자

3) 대상자 책정기준

(1) 1종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 보장시설 수급자, 6개월 이상 장기질환자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지침에 의한 소득계층 등급기준표에 의거 9등급 이하로 분류된 세대
- (단, - 8등급으로 분류된 세대 중 소년·소녀가장세대, 모자세대,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세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책정
-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소득, 재산조사
 - 북한이탈주민 : 통일부장관이 요청한 세대
 -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일반수급자의 최저생계비 1인을 추가한 금액의 120%적용
 - 행여자 :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로 행정기관이 응급진료를 받게 한 자

- 인간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요청한 세대
- 의사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
- 이재민 : 재해구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입양아동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특별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개인급여)

(2) 2종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중 1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차상위 1종 : 희귀난치질환자(개인급여)
- 차상위 2종 : 기타 만성질환자, 12세미만의 아동

4)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

(2004. 12 .31기준)

(세대/인원)

종별	총계 (A+B)	1 종							2종 (B)	차상위	
		소계 (A)	수급자	국 가 유공자	5·18 관련자	북한이 탈주민	의사자 유 족	시 설 수급자		1 종	2 종
계	4,444/ 8,600	2,926/ 4,637	2,666/ 4,015	221/ 503	8/29	31/40	1/3	50	1,433/ 3,871	31/31	54/61

5)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지원기준

(진료비중 급여부분에 해당)

- (1) 1종 : 진료비 급여부분의 100%
- (2) 2종 : 국가부담 85%, 본인부담 15%

6) 진료절차

- (1) 지참물 : 의료급여증, 주민등록증
- (2) 절 차 : 3단계로 하며, 2차 또는 3차 진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진료담당 의사의 진료 의뢰서를 발급받아 희망 진료기관에 제출한다.

7) 의료급여 대불 안내

- (1) 대 상 자 :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 (2) 범 위 :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입원한 경우 진료비중 급여부분의 85%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본인부담금 15% 중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금액
- (3) 신청절차 : 진료기관(병원)의 확인을 받아 구청 사회복지과에 제출
- (4) 상환방법 : 대불일로부터 3월경과 후 분할 상환하며 무이자로 함.
 - 10만원 미만 : 3회
 - 10~30만원 미만 : 8회

- 30만원 이상 : 12회

8) 본인부담 보상금 지급

- (1) 대상자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2) 범 위 : 매월30일간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30일 미만이라도 20만원을 초과하면 보상)
- (3) 신청절차 - 지급청구 및 지급 : 수급권자(청구)→구청장 지급
- 지급대상내역 통보 : 공단→구청장→수급권자
- (4) 지급제외대상
 - 등록장애인
 - 보건소주관 희귀난치질환사업, 소아암사업 대상으로 전액지원 받는 경우
 -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
 - 진료개시일이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

9)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 지원

- (1)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1~6급 장애인 진료 시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지원 (단, 의료급여 적용분에 한함)
- (2) 지원내용
 - 1차병원처방전이 없을 경우엔 750원, 처방전이 있으면 500원, 약국은 250원을 지원
 - 2, 3차 진료기관 진료비는 의료급여 적용분 (본인부담금 중 급여부분)의 전액

3. 여 성 · 아 동 복 지

가. 아동복지

1) 영 · 유아 보육시설 운영

우리 구 관내에서 운영중인 보육시설은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16개소이며, 민간보육시설 108개소로 직장보육시설 3개소, 가정보육시설 51개소로 2004년도 말 178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쾌적한 보육환경조성 및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6,789,434천원의 운영비를 지원 하였으며,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지원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계	국고보조	시비보조	구비보조	비고
총 계	6,789,434	3,394,717	1,697,359	1,697,358	
시설별지원	4,803,186	2,401,593	1,200,797	1,200,796	
아동별지원	1,986,248	993,124	496,562	496,562	

○ 운영비보조금 지원 중, 시설별 지원은 공립 및 종교기관부설, 보육시설 (장애아 및 영아전담) 16개 시설 종사자 및 민간시설 영아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교재 교구비, 차량운영비 지원이며,

○ 아동별 지원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1,697명에 대한 지원 금액임.

(2)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정부법인)보육시설현황

연번	시 설 명	주 소	정원	전화번호	면적(m ²)	비고
1	만월 어린이집	만수2동 5-377	143	466-0391	497.75	
2	남동 어린이집	간석3동 224-462	99	421-3377	397.1	
3	고잔 어린이집	고잔동 178-5	148	442-0550	700.18	
4	씨튼 어린이집	만수6동 1007	20	472-5004	227.61	
5	개나리 어린이집	만수4동 주공@ 216-102	14	465-2296	88.81	
6	남부 어린이집	구월1동 1232	126	463-8386	102.5	
7	목민 어린이집	만수2동 867-9	148	462-3795	518.17	
8	만수 어린이집	만수1동 1005	95	463-8167	162.17	

2)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수감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서 만18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인 가정으로 가정의 생계를 이끌어가는 세대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해줌으로써 가정 내에서 생활유지 및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고 있다.

(1) 2004. 12. 31현재 소년소녀가정 세대 현황 : 83세대 115명

(2)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현황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 방법은 생활보장법에 의한 주·부식비, 연료비 및 수업료 전액 지원, 재학생에 대한 학용품비, 교통비 지원, 전세대원에 대한 피복비, 영양급식비 지원 등의 법정지원방법과, 월세 거주 세대에 대한 전세금 지원 및 공직자, 기업체 임직원, 종교단체 및 사회단체등과 결연을 추진하여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통한 후원자 지원 등이 있다.

2004년도의 83세대 115명에 대한 보조사업(세대보호비, 도시락비등)은 146,410

원이 지원되었고, 후원자 결연지원은 44,412천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정세대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였고, 하계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7,260천원, 학원비 10,24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 및 명절 등에는 위안잔치를 개최하여 위로하고, 사회 각층의 정성어린 선물 등을 전달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였다.

나. 여성복지 증진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건전사회 조성을 위한 여성의 역할 증대 및 요보호여성발생예방 및 복지증진으로 건강한 가정,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힘쓰고 있다.

1)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역할 강화

여성의 의식함양과 능력개발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의 다변화에 따른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코자 관내 일반여성, 여성단체 회원 등 5,082명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자녀의 학습능력향상 사고력 키우기, 자녀두뇌개발을 위한 전뇌교육,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가족과 함께 보는 아동극 공연)등을 실시하였고, 건전가요노래교실, 가족봉사체험캠프, 여성주간문화행사 등을 개최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을 유도하고 점차 증대하는 여성의 문화욕구 충족시킴은 물론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하였다.

2) 여성복지 상담 및 예방사업

(1) 여성상담

가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정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구성원의 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요보호여성(미혼모, 저소득층 여성, 모자가정, 학대받는 여성 등) 및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여 여성문제, 가정문제 등의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 상담실적

상담건수	조 치 실 적				
	선도귀가	시설알선	생계보호	상담조언	기 타
595건		279	260	56	

(2)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성적피해 예방교육

현대사회의 왜곡된 성문화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성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성지식을 인식시키고, 바람직한 성 가치관 확립 및 인격형성을 도모코자 관내 초·중·고등학생 5,013명을 대상으로 미혼모 발생 예방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청소년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사회교

육적 관점에서 매년 학교를 중심으로 상호 연계하여 성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3)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사업

배우자와 사별, 이혼, 가출 또는 유기된 여성(남성)이 18세(취학시 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 시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등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였고, 6세 이하의 아동 532명에게 34,443천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였으며, 초등학생 776명에 34,150천원지원, 모부자가정 세대에 32,320천원의 월동용 난방 연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추천, 직업훈련 실시, 결연 및 후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2004. 12. 31현재 저소득 모·부자가정은 370세대 976명이다.

4)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

관내 14개 여성단체장으로 구성된 여성단체협의회를 주축으로 각 여성단체별로 각 여성단체별 특색사업과 봉사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알뜰장터 운영으로 단체간 협력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의 여성단체 역할 정립 및 활성화를 도모코자 여성단체회원 45여명을 대상으로 여성단체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앞으로도 단체별로 특색있고 전문적인 사업발굴 유도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전개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1) 여성단체현황

단 체 명	회원수	단 체 명	회원수
계	2,496명		
녹 색 어 머 니 회	20명	자유총연맹여성회	630명
한국통일여성협의회	73명	적십자사부녀봉사회	302명
미 용 사 회	290명	대한주부클럽	20명
바르게살기협의회여성분과위원회	150명	주부환경연합	28명
소래포구상인번영회	100명	한 국 부 인 회	19명
전국주부교실	100명	새마을부녀회	500명
대한민국재향군인여성회	209명	대한어머니회	55명

5) 여성 자원봉사활동 센터 운영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여성 자원봉사활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청소, 세탁을 해주는 재가봉사와 장애아어린이집 수업보조, 결식 노인분들을 위한 무료급식소 봉사, 어린이학습지도, 물리치료 보조 등의 자원봉사 활동에 1,391회 235명이 참여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4. 노 인 복 지

가. 노인현황

2004년 12월말 우리구 65세이상 노인인구는 22,707명으로 전체인구 384,224명중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0.9%내외로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노인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발전에 기여해 온 노인들이 존경받으며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을 개발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여가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 노인복지사업

1) 노인건강진단 실시

관내거주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24명을 대상으로 2004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노인질환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건강의 유지·증진을 도모하였다.

2) 경로연금 지급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1933.7.1일 이전 출생의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중 65세~79세는 매월 45,000원, 80세이상은 매월 50,000원을, 저소득노인 전액 지급자는 매월 35,000원을 감액지급자는 매월 30,630원을 지급하여 연간 1,065,942천원을 지원하였다.

3) 경로수당 지급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되 분기 첫달에 해당 금액을 신청대상자 통장계좌로 온라인 입금하여 노후생활에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간 3,280,218천원의 교통비를 지원하였다.

4) 경로의 달 행사 실시

매년 10월 한달을 경로의 달로 정하여 각 경로당별 계획에 의거 경로잔치를 개최함으로써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고 노인복지증진 기여자를 선발하여 표창하였다.

○ 개최내역

- 일 시 : 2004. 10. 1. ~ 10. 31.
- 장 소 : 각 경로당별 자체계획에 의거 노인잔치 시행
- 내 용 : 노인기에 경로잔치대회 23,800천원 지원